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의 징계 관련 사항은 상위법(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음

3. 주요내용

가. ‘징계’ 조항 삭제(제19조)

교수의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9조(징계) ①교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교수징계위원회를 둔다.</u> <u>②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u> <u>1. 국방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u> <u>2. 국방부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u> <u>3. 징계대상자의 소속 대학원 또는 대학의 원장 또는 학장</u> <u>4. 교수부장</u> <u>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인 교수가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은 위원에서 제외하되, 국방대학교 부총장이 위원이 된다.</u>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국방부	
연 락 처	(02) 748 - 6245